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7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현행법 제75조제2항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로 하여금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제50조제3항후단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②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에게도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법률과 시행규칙은 교육훈련 이수 의무자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음.

이는 교육훈련 이수 의무에 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종류의 유통주체에 대하여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법률과 시행규칙 간 괴리가 발생한 것에서 시작됨.

이후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매매·수의매매(隨意賣買)가 추가되는 등 경매사의 역할이 커지고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신규 임용된 경매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매사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2018년도에 ‘경매사(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에 대하여는 법률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 12. 31., 시행 2019. 7. 1.)되었음. 그 결과 ① ‘경매사’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즉, 종전부터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⑥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는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에 포섭되어, 모두 의무적인 교육훈련 이수 대상자가 됨.

그러나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

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는 여전히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받고 있음.

이는 법률에 교육훈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개정안은 교육훈련 이수 의무자에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교육훈련 이수 의무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각 유통주체 교육훈련 이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매시장의 각 유통주체는 도매시장 관련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매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규칙 제50조제

3항의 내용을 삭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이 경우 ① 경매사를 제외한 ② 도매시장 신규임원 ③ 중도매인의 의무적 교육은 폐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추이를 감안하여 개정안의 수용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